

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140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3년 10월 16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시행(’23.7.10)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나.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라.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마.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협의 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- 다. 협의사항
 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해당 없음
 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 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 제외
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해당 없음
- (5) 시민협력과(공공갈등진단): 해당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협의 완료(위원회 신설검토서 제출)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협의사항:
협의 완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 (2023. 08. 17. ~ 09. 06.) 결과: 의견 없음
- (2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 없음

※ 작성자 :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양현정(☎2133-6731)

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등)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,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실·본부·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한다.

제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2에 따른다.

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.

⑤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9조에 따른다.

제6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맡는다.

제7조(분과위원회)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65조제8항에 따라 기능별 또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.

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전문분야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, 분과위원회의 업무 분야별 특성과 업무량 등에 따라 위원 수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.

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분과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지명한다.
-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⑤ 분과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분과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심의·의결로 본다.
- ⑧ 분과위원회는 회의 결과 및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8조(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) 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 제6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시대지원단(이하 “지원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지원단에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전문적 조사·연구를 담당하는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9조(의견의 청취 등)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,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0조(조사·연구)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

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회의록)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,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법」 제67조 및 「동법 시행령」 제65조에 따른 서울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으로 매해 10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,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'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'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작성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4. 작성자 :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(☎ 2133-6731)

위원회 신설검토서

위원회명	서울특별시 지방시대위원회
설치근거	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(이하 특별법)」 제67조, 「동법 시행령」 제65조 및 제66조
설치목적	서울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사항을 심의
설치 필요성	특별법 시행('23.7.10.)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심의·자문하는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의무 신설
위원회 성격	자문(), 심의(○), 의결()
설치요건 부합 여부	○ 부합 - 위원회 심의사항이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있는 사람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
기존 위원회와 중복·유사 여부	-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,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존재 (유□, 무■) -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능 유사한 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(유□, 무■)
상설위원회 설치요건	○ 위원회 설치근거 법령에 위원임기(2년) 규정(특별법 제65조 제4항)이 명시되어 있어 상설 운영 필요 ※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
위원회 필수 구성내용을 조례에 반영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위원회 설치목적·기능 및 성격 ■ 위원의 구성 및 임기(임기는 상설위원회만 규정) □ 존속기한(법령상 강행 위원회 제외) ■ 위원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 ■ 회의 소집시기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■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■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조직담당관 검토결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설치요건 부합여부 : 적정 ○ 상설위원회 설치 요건 부합 여부 : 적정 ○ 존속기한 설정 여부 : 적정 ○ 필수규정 명시여부 : 적정